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6호, 2022. 6. 30., 일부개정]

### 【제정·개정 이유】

제정·개정문

전체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37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263원으로 각각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2.5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38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영세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 ● 대통령령 제3273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2년 7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370원"을 "332.5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2년 7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263원"을 "238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